의안번호	2201948
의 뢰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4.08.02.
추계번호	24D2108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) 신설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・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국유・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・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・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름(제2항)	

Ⅱ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(안 제14조의2 신설)

○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・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, 국·공유 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- 2024년 현재 자율방범대 4,498개 중 사무공간이 없는 경우는 541개이며,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인 경우가 3,016개(67.1%)임

[표 1] 자율방범대 사무실 현황(2024)

구분	사무공간 미보유	사무공간 보유				합계
		계	컨테이너	민간건물	공공건물	
개소	541	3,957	3,016	495	446	4,498
비중	12.0	88.0	67.1	11.0	9.9	100.0

자료: 경찰청

○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무실 면적,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사무실의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